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활용 학교에 우선지원 등〉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424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활용 학교에 우선지원	3
2. 사회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 연계	8
3. 환경교육 유공 교원 등 포상 확대	12
※ 참고자료	16

I. 제안경위

2026년 4월 17일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환경체험·보전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최근 교육부에서는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예방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학교환경교육은 교과 중심의 이론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학교 내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등 환경체험 인프라를 교육에 연계하여 활용하기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다수 개발되고 있으나, 이를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제도적 통로가 부재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분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에 헌신하는 교원 및 연구모임에

대한 포상 등 우대 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재생에너지 설치·활용 학교에 우선지원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u>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법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유치원·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에 환경 관련 교육 지원,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환경체험 및 보전활동 활성화 등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연계하여 교육부에서는 현재 국공립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결합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26년 기준 400개교 대상, 특별교부금 433억 원 규모)을 추진 중임.

[햇빛이음학교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국공립 초·중·고·특수 400교(신규 260교, 개별사업 140교*)
 - * 공간재구조화, 학교시설복합화, 신설학교 등 준공에 따른 설치
- (사업기간) ’26. 3. ~ ’27. 2.
- (설치용량) 학교당 50kW* 내외(자가소비형)
 - * 태양광 패널 크기 약 4m × 40m
- (활용방식) 학교 전기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 형태(단순 병렬방식)
- (소요예산) 특별교부금 433억원 이내
 - 교육청별 추경시기 및 시설예산 확보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특교로 추진
 - 50kW 설치 시 교당 166백만원 소요 예상(kW당 3,330천원)
- (지역별 배분) 태양광 미설치 학교 중 설치가능 학교 수* 비율,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별 물량 배정
 - * 소규모 학교(통폐합 가능성), 준공 후 30년 경과 건물만 보유한 학교(개축 가능성) 설치 제외

(단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학교수	43	27	11	13	16	8	7	3	41	11	7	21	14	13	12	10	3	260

- (시범학교 선정) 건물 배치형태 및 크기, 옥외공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청별로 시범학교 선정
- (교육 연계) 태양광 설비를 활용한 교육모델 개발·보급,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K-GEP) 개발 및 선도학교 지정, 교원역량 강화 등

※ GEP(Greening Education Partnership): 유네스코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후변화교육 파트너십으로, 모든 학습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4가지 주요 영역(학교의 녹색화, 교육과정의 녹색화, 교사훈련, 지역사회)을 중점으로 포괄적·체계적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비전 및 목표

Vision

학교 탄소중립 실현과 학생 환경·생태시민성 함양

목표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치**
학교를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실천의 장으로 전환

사업
내용

국공립 초중등 4,378교
태양광 발전 설비 확충

[시범사업]
400교

(신규설치 260교 + 개별사업 140교*)
* 공간재구조화, 학교복합시설 등 준공분



[확대사업]
3,978교

(세부사업별 물량 추후 결정)

※ 1) 설치가 곤란한 학교
 - 소규모학교(2,274교), 노후학교(97교)
 2) 사립학교는 기후에너지부에서 별도 추진

태양광 설비 활용 교육모델
개발 보급 및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학교급별 교육모델 개발
전문가컨설팅 지원



[확대사업]
 ◇ 전문가컨설팅 지원
 ◇ 교사 역량강화 연수
 ◇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 선도학교 지정·운영

※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학교 및 소속 교원 대상으로
 추후 확대사업 세부물량 확정에 따라 조정

사업
기간

'26. 3. ~ '30. 12. (5년간)

'26년 시범사업 추진 후 '30년까지 본 사업 추진

※ 종합 추진계획은 '26년 하반기에 수립 예정

재원

[시설분야] 보통교부금

시범사업은 교육청별 추경시기가
불분명하고, 시설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교부금(433억원)으로 추진

※ (지원단가) kW당 3,330천원

[교육분야] 특별교부금

시도별 태양광 설치 학교 수 및 수요에
따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지원

자료 : 교육부

참고로,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공립 초·중등학교 총 10,315교 중 태양광 보유학교는 3,566교(34.6%)로,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통해 소규모 및 노후학교 2,371교를 제외한 학교 중 총 400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2025년 기준 태양광 설치 학교 현황]

학교유형	전체 학교 수(교)	태양광 설치 학교 수(교)	비율(%)
국·공립학교	10,315	3,566	34.6
사립학교	1,735	자료 부존재	-
합계	12,050	-	-

자료 : 교육부

개정안은 학교 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동법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이 현장과 밀착하여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 활용 학교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는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이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기여하고, 현장 중심의 체험 교육을 활성화하여 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재생에너지 설비 보유 여부에 따라 지원을 차등하는 것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관련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할 수 있음.

이는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모든 학생의 균등한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실태를 우선 파악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교내 재생에너지 설비 등 실질적인 환경 체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가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입장임.

2. 사회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 연계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개발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환경교육에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4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u> <u>지사는 개발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u> <u>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환</u> <u>경교육에 연계·활용할 수 있다.</u>

현행법 제21조²⁾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사회환경교육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개발·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는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요건,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단체, 기업, 지자체 등이 개발한 우수 프로그램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 개요]

- (목적)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보급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준 높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사회환경교육 시장 활성화 도모
- (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 (지정권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지정절차

사전 컨설팅	지정신청	지정심사	지정심의의결	지정통보 및 사후관리
(신청기관)	(신청기관)	-요건검토(지정사무국) -서류심사(심사평가단) -현장심사(지원단)	(우수환경교육 지정 분과위원회)	-운영결과보고 -이행확인점검 -지정변경 -프로그램 홍보 등

○ 신청요건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지자체, 기업, 학교 등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개발·운영하려는 누구나 신청 가능
프로그램 필수조건	- 프로그램 교육시간이 동일 대상 최소 80분 이상인 프로그램 (비대면 동일 대상 최소 60분 이상)
책임개발자 필수조건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수 - 환경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환경교육사 2급 취득자 -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환경교육 관련분야에 만2년 이상 경력자 - 환경교육사 3급 취득 후 환경교육 관련분야에 만2년 이상 경력자 - 환경교육 관련 분야에 만6년 이상 경력자

○ 연도별 지정현황('26.4.기준)

(단위 : 개)

구분	누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신청	2,301	47	103	129	90	82	112	85	75	136	140	123	143	274	247	279	236
지정	1,723	34	72	77	65	56	86	71	58	121	115	101	130	174	157	221	185
유효	548	-	-	-	-	-	-	-	-	-	-	-	-	-	145	218	185

이와 같이 정부가 인증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매년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연계 플랫폼이 부재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분절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역사회에 산재한 우수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분절 현상을 해소하고 교육 자원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환경 학습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초·중등교육법」³⁾ 등 교육 관계 법령상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권한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에게 학교 교육과정 연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 당국의 권한과 충돌하거나 교육 현장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특히, 안 제14조제4항은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연계·활용 시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의 법적 효력과 절차, 협의 불성립 시 처리 방안 등이 불명확하여,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도지사와 학교의 장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教授)·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은 학교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사전 협의 및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연계 절차 프로세스 수립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권한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라는 규정은 처리 방안이 불명확하여 실제 집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역할과 책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3. 환경교육 유공 교원 등 포상 확대

개정안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상 교원,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 등을 환경교육 활성화 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u>우수학교</u> ,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및 그 밖의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포상) ----- ----- ----- ----- <u>우</u> <u>수학교</u> ,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사람</u> ----- ----- -----.

현행법⁴⁾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및 그 밖의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방법,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환경교육도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공로가 인정되는 환경교육 우수학교, 환경교육도시 및 그 밖의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년 10명의 포상자를 선발하여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교육 포상 현황]

연도	포상자	포상자 선정 사유	포상
2023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환경교육업무 유공 ('23.6.8.)	장관 표창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	환경교육업무 유공 ('23.6.8.)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나*숙	환경교육업무 유공 ('23.6.8.)	
	장야초등학교 손*람	환경교육업무 유공 ('23.6.8.)	
	강원도자연학습원 손*형	환경교육업무 유공 ('23.6.8.)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엄*철	환경교육업무 유공 ('23.6.8.)	
	전주술내고등학교 윤*성	환경교육업무 유공 ('23.6.8.)	
	하남시청 신*섭	환경교육업무 유공 ('23.6.8.)	
	국립생태원 최*준	환경교육업무 유공 ('23.6.8.)	
	문흥초등학교 최*민	환경교육업무 유공 ('23.6.8.)	
2024	고성중학교	환경교육업무 유공 ('24.6.5.)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환경교육업무 유공 ('24.6.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도시에 환경교육 관련 시설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연도	포상자	포상자 선정 사유	포상
	한밭종합사회복지관	환경교육업무 유공 ('24.6.5.)	
	한국환경공단 김*현	환경교육업무 유공 ('24.6.5.)	
	국립공원공단 김*현	환경교육업무 유공 ('24.6.5.)	
	영광유치원 나*란	환경교육업무 유공 ('24.6.5.)	
	목도초등학교 김*조	환경교육업무 유공 ('24.6.5.)	
	사동고등학교 변*선	환경교육업무 유공 ('24.6.5.)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박*순	환경교육업무 유공 ('24.6.5.)	
	용인특례시 한*연	환경교육업무 유공 ('24.6.5.)	
2025	국립공원공단 북한산생태탐방원	환경교육업무 유공 ('25.6.5.)	
	(재)울산연구원	환경교육업무 유공 ('25.6.5.)	
	국립생태원 김*련	환경교육업무 유공 ('25.6.5.)	
	산남초등학교 서*수	환경교육업무 유공 ('25.6.5.)	
	산외초등학교 서*연	환경교육업무 유공 ('25.6.5.)	
	전주서천고등학교 이*훈	환경교육업무 유공 ('25.6.5.)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조*이	환경교육업무 유공 ('25.6.5.)	
	한국교원대학교 영유아교육연수원 진*희	환경교육업무 유공 ('25.6.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채*선	환경교육업무 유공 ('25.6.5.)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리	환경교육업무 유공 ('25.6.5.)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안은 환경교육에 헌신하는 교원⁵⁾을 포상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현장 교육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교육 현장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음.

다만, 현행법상 포상 대상에 “그 밖의 기관·단체·개인”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존재하므로 현재에도 교원 개인에 대한 포상은 가능한바,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은 교원의 사기 진작 및 상징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6

5)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참고

환경교육업무(환경교육주간) 유공 장관표창

□ 목 적

- ‘환경교육주간(6.2~6.8)’ 개최를 기념하여 환경교육업무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그간의 노력에 보답하고 격려하기 위함

□ 포상규모 : 장관표창 10점

□ 추천기준

- 환경부포상 업무지침(23.2.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 등 발굴

구분	공무원·공공기관	민간인(단체 포함)
자 격 요 건	○ (환경부) 실재직기간 3년 이상, 환경업무 추진경력 2년 이상인 자 ○ (환경부外 공무원) 실재직기간 3년 이상, 공적 관련 부서근무 1년 이상인 자 ○ (공공기관) 실재직기간 3년 이상, 환경업무 추진경력 2년 이상인 자 ○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정책 시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공적이 널리 인정된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며 주위로부터 인정받은 자	○ 당해 공적분야에서 2년 이상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기관 ○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추진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종료시 추진실적 평가 우수단체 및 기관 ○ 환경업무와 지역 사회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제 외 대 상	○ 최근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은 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을 받은 자 ○ 재직 중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 ○ 최근 3년간 환경관련법규 위반으로 처분 진행중 또는 조사중이거나, 각종 비위 등에 연루되어 표창이 합당치 않은 단체 및 소속 임직원

□ 추진일정

- 표창 후보자 접수(~4.11.)
- 공개검증 및 환경법 위반사실 조회(4월중)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및 장관표창장 발급 요청(5월중)
- 표창장 수여(6월)